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0차/제정 2021-08-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부문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사회운영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ESG 경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SG 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ESG와 관련한 주요 경영전략, 추진계획, 진행 및 성과에 대해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비상임이사과 기획부문이사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분장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를 두며, 위원회 간사는 ESG 경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위원회 소집 및 위원회 상정안건 심의결과 통보
2.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의

제7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상정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소집 및 통지)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와 목적이 명시된 별지 제1호서식의 ESG 경영위원회 소집 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의결방법과 절차)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일부 및 전부가 화상회의를 통해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안전과 관련하여 제척·회피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안전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 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의사항)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ESG 경영 추진계획(추진과제 포함)
2. 윤리경영 기본계획
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계획
4. 리스크 관리계획
5. ESG 관련 정보 공시계획
6. 그 밖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주요이슈 등 위원회에서 심의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에 부의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ESG 추진과제 이행 결과
2. 청렴도 조사 결과
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결과
4. 사회적 가치 기본계획
5.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 결과
6. ESG 관련 정보 공시 결과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제3항의 접수 의안을 검토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부의사항인 경우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전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발언요지,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을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통지의무) 위원회는 의결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간사는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 부문이사 및 관계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공사의 비용으로 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4조(위원회 지원) 공사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시설, 인력,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당의 지급) 비상임이사에게 「위원회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1.08.24.)

이 규정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SG 경영위원회 소집 통지서

수 신 : ○○○ 위원 귀하

20 년도 제 차 ESG 경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고자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1.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2. 장 소 :
3. 안 건

안전번호	안 건 명	제안부서
제 호		
제 호		
제 호		

붙임 : 제 차 ESG 경영위원회 안전 각 1부.

20 년 월 일

ESG 경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ESG 경영위원회 간사 (인)

【별지 제2호서식】 (제9조제3항 관련)

ESG 경영위원회 서면 의결안		
의안번호	제 호	
보고일자	년	월 일

건 명	
-----	--

제 안 자	
제출일자	년 월 일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표제의 별첨사항을
서면 의결하오니 안전에 대한 찬반여부를 아래에 기명날인 바랍니다.

20 . . .

위 원 명		찬 성 함	반 대 함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결정을 확인함.

20 . . .

ESG 경영위원회 위원장 (인)

1. 부의근거 및 사유

2. 주요골자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규정

나. 예 산

다. 합 의

라. 기 타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제3항 관련)

제 차 ESG 경영위원회 의결안		
의안번호	제 호	
보고일자	년	월 일

건 명	
-----	--

제 안 자	
제출일자	년 월 일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

3. 주요골자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규정

나. 예 산

다. 합 의

라. 기 타

【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제3항 관련)

제 차 ESG 경영위원회 보고안		
의안번호	제 호	
보고일자	년	월 일

건 명	
-----	--

제 안 자	
제출일자	년 월 일

1. 보고근거 및 사유

2. 주요골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규정

나. 예 산

다. 합 의

라. 기 타

제 차 ESG 경영위원회 회의록

I. 회의개요

소 집 자		회의장소	
일 시	20 년 월 일 00:00 ~ 00:00		
참석위원	위 원 명		서 명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II. 부의안건 처리결과

의안번호	제안자	안 건 명	심의 결과
주 요 발 언 내 용			
의안번호	위 원 명	발언 요지(찬성·반대 사유)	
	○○○		
	○○○		
	○○○		
	○○○		
	○○○		
	○○○		

ESG 경영위원회 심의 통보서

수 신 :

제 차 ESG 경영위원회(20 년 월 일)에 부의한 안건이 다음과 같이 심의되었음을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 다 음 -

의안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비 고

20 년 월 일

ESG 경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ESG 경영위원회 간사 (인)